



정보통신안테나

정보통신안테나

입법예고

- 전기통신공사업법중 개정법률(안)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
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정(안)
- 산업교육 진흥법 개정(안)

공포

- 무선설비형식 검정 및 기술기준
확인증명규칙중 개정령
- 전자파장애검정규칙중 개정령
- 우편법시행규칙 개정령

입법예고

◎체신부공고 제1994-153호

전기통신공사업법중 개정법률(안)

(공고일 94. 9. 26)

개정취지

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환경변화에 맞추어 소규모 단순공사를 시공하는 별종공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 완화와 공사업 개시신고 폐지 등 공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·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별종공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함.
-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중 공사업기기에 관한 사항 및 공사업 개시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함.
- 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분리발주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괄발주를 인정함.
-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별종공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규모업자를 보호함.

◎경제기획원고시 제1994-7호
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정(안)

(공고일 94.9.16)

제정이유
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·공포('94.8.3. 관보게재)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민자유치자본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함.
-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15인이내로 구성함.
 - 위원은 내무부장관, 재무부장관, 건설부장관, 교통부장관, 상공자원부장관, 농림수산부장관, 체신부장관, 문화체육부장관, 환경처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
- 주무관청이 수립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중 위원회 심의대상 범위
 - 총사업비규모가 1천억원이상인 사업
 -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
 - 기타 주무관청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부의하
-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계획의 범위

는 사업

- 총사업비 규모가 2천억원이상인 사업
 - 부대사업 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이상인 사업
 - 기타 주무관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업
-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업무 등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시 위탁수수료율 등 위탁조건을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 토록 함.
- 부대사업은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택지개발사업만 시행요건을 제한
- 택지개발사업비가 제1종시설 총사업비 규모이내일 것
 - 제1종시설사업의 공정이 10%이상 진행된 후 대상택지를 분양
- 민자유치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소유권 귀속의 기준
- 제1종시설중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1종시설의 “보조기능을 수행하는 시설”로 한정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시 미리 반영토록 함.
 - 제2종시설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“공적업무수행 등 공공성유지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”로 제한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시 미리 반영토록 함.
- 제1종시설 총사업비 범위
- 총사업비의 산정항목을 규정하여 제1종시설 사업계획수립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(조사비, 설계비, 순공사비, 보상비, 부대비, 운영설비비, 제세공과금, 영업준비금, 이윤 10%)
- 제1종시설의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을 준용토록 함.
- 제1종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이 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관

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유지·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설의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.

- 무상사용내용 변경의 경우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익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하고, 무상사용내용 변경에 따른 보상을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회수 차질분, 필요경비 및 손실로 정함.

– 사용료신고시 신고서를 사용료징수 개시 15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첨부 서류를 정함.

-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및 보증료 기준
 -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3개 관리기관(산은, 신보, 기술신보)의 업무기준을 통일토록 함.
 -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50억원 이내로 제한함.
 -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천분의 100이내로 제한함.

-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공공부문의 출자 및 의결권 제한의 예외를 규정함.

–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에 공공부문이 50%이상 출자할 수 있는 경우를 국공유재산의 활용이 필요한 사업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함.

-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합동법에 출자한 공공부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의 해산, 청산, 파산의 경우,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로 함.

-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및 장기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의 해산, 청산, 파산의 방지

및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.

◎ 교육부공고 제1994-28호

산업교육진흥법개정(안)

(공고일 94.9.3)

개정취지

직업기술교육의 확충 및 충실화를 통하여 국제화·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문중심의 교육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며, 이를 위하여 국가 등의 산업교육기관 설치·운영 등 산업교육 진흥의 의무를 강화하고, 민간협의체인 산업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협동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- 가. 학생진로지도를 강화하여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중학교 졸업생 수의 2분의 1이상의 학생수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산업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.
- 다. 산업기술발전과 산업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현장실습 대상 산업체 선정을 중앙 및 지방 산공회의소에 설치되는 민간협의체인 산업교육협의회가 1차적으로 담당하도록 함.
- 마. 산업교원과 산업체의 장이 산업기술의 개량 또

- 는 개발을 위하여 산업자문을 하거나 연구기기를 상호활용할 수 있도록 함.
- 바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교육협의회는 기술의 혁신 등에 의한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도록 함.
- 사. 산업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하고 산업교육을 위한 산업체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협의회를 둠.
- 아. 산업교육협의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행정기관, 산업교육기관, 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.
- 자. 산업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- 차. 국가 등은 외국의 정부, 국제기구, 산업체 등과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시책을 강구하도록 함.

공포

◎체신부령 제877호

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중 개정령

(공포일 : 94. 9. 13)

개정이유

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를 형식검정 대상기기에서 제외하여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 편, 형식검정신청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그 처

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를 형식검정대상 기기에서 제외하여 아마추어무선 인구의 저변확대와 아마추어무선국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(제2조제1항).
- 나. 종전에는 형식검정신청을 하는 경우 취급설명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급설명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(제3조제2항 및 제3항).
- 다. 형식검정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및 자가사용 목적기기인 경우에는 20일에서 10일로, 레이다 등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관련산업체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(제8조).
- 라. 기술기준확인증명을 하는 경우 출장증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100대이상에서 50대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(제25조제2항).

◎체신부령 제878호

전자파장해검정규칙중 개정령

(공포일 : 94. 9. 13)

개정이유

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전자파장해검정제도의

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현재 체신부장관이 지정·감독하는 전자파장해검정 시험기관을 전파연구소장이 지정·감독하도록 하고, 전자파장해검정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6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(제13 및 제14조).
- 나. 전자파장해검정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장해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(제31조).

◎체신부령 제879호

우편법시행규칙 개정령

(공포일 : 94. 9. 13)

개정이유

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현행 우편물 종별체계를 우편물의 송달속도에 의한 종별 체계로 개편하고 기타 비현실적인 우편이용조건을 현실화하여 우편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새로 도입되는 우편물 종별체계를 우편물의 송달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배달하는 빠른 우편물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이내에 배달하는 보통우편물로 구분함(제12조)
- 나. 체신부장관은 도서·신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송달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(제13조).
- 다.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가 우체국과 체결한 정기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빠른우편물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(제14조제1항).
- 라. 배달하는데 시간제 여유가 있는 보통 우편물은 요금감액 조건으로 송달기준일수에 일정한 일수를 더한 날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함(제14조제2항).
- 마. 체신부장관은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(제15조).
- 바.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부가하여 취급할 수 있는 특수취급의 종류를 정함(제25조). ♦

**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는
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**